

경상북도 공고 제2025-1004호

「경상북도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도민들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경상북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5월 12일

경 상 북 도 지 사

경상북도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61조에 규정된 손실의 보상과 관련된 내용을 추가하고 조례의 미비한 점을 보완하여 도자연유산의 보존·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자연유산자료 용어 정비(안 제3조 및 제5조제1항제2호)

- 관리단체의 관리행위 범위 및 내용 적시(안 제24조)
- 손실의 보상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25조의2)
- 기타 조례 미비사항 보완(안 제35조제1항제1호다목)

### 3. 개정조례안: 붙임

### 4. 의견제출

이 규칙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6월 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경상북도지사(담당부서: 문화유산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제출방법: 서면, 팩스, 전화, 이메일, 방문 등

라. 보내실 곳

주소: 우)36759 경상북도 안동시 풍천면 도청대로 455 경북도청 문화유산과

전화: 054-880-3263 Fax 054-880-3179, 이메일: phw10939@korea.kr

## 경상북도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경상북도 자연유산자료(이하 “도자연유산자료”라 한다)”를 “자연유산자료”로 한다.

제5조제1항제2호 중 “도자연유산자료”를 “자연유산자료”로 한다.

제24조 중 “법 제27조제4항에 따른다”를 “다음 각 호와 같다”로 하고, 같은 조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해당 도자연유산등 및 그 보호물의 유지·관리 및 일상 점검
2. 해당 도자연유산등의 주변 환경의 보호
3. 해당 도자연유산등의 공개·전시·홍보 등 활용 시 도자연유산등의 훼손·멸실 등 방지
4. 해당 도자연유산등의 관람·체험 등에 참여하는 사람의 안전 관리
5. 그 밖에 해당 도자연유산등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필요한 사항

제2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5조의2(손실의 보상)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1. 제35조제1항제1호부터제4호까지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여 손실을 입은 자

2. 제35조제2항에 따른 조치로 인하여 손실을 입은 자

3. 제36조제5항에 따른 조사행위로 인하여 손실을 입은 자

4. 제39조제1항에 따른 조사행위로 인하여 손실을 입은 자

② 제1항에 따라 손실을 보상받으려는 자는 도자연유산등의 종류, 명칭, 수량, 소재지, 보관장소와 그 사유를 적은 신청서에 증명 서류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그 사실을 조사하여 손실의 원인이 그 소유자 또는 관리자나 관리단체에 있는 경우 보상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35조제1항제1호다목 중 “제34조제2항제2호에”를 “제34조제2항제3호에”로 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경상북도 자연유산(이하 “도자연유산”이라 한다) 또는 경상북도 자연유산자료(이하 “도자연유산자료”라 한다)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p>	<p>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 ----- -----자연유산 자료----- ----- ----- ----- ----- ----- ----- -----</p>
<p>제5조(도 자연유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도지사는 법 제41조의2에 따라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을 위한 사항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심의하기 위하여 경상북도 자연유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p> <p>1. (생략)</p> <p>2. 도자연유산 또는 도자연유산자료(이하 “도자연유산등”이라 한다)의 지정과 해제</p> <p>3. ~ 5. (생략)</p> <p>② ~ ④ (생략)</p>	<p>제5조(도 자연유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 ----- ----- ----- ----- ----- ----- ----- ----- -----</p> <p>1. (현행과 같음)</p> <p>2. -----자연유산자료----- -----</p> <p>3. ~ 5. (현행과 같음)</p> <p>② ~ ④ (현행과 같음)</p>

제24조(관리단체의 관리행위 범위 및 내용) 관리행위의 구체적인 범위와 내용은 법 제27조제4항에 따른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제24조(관리단체의 관리행위 범위 및 내용) -----  
-----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해당 도자연유산등 및 그 보호물의 유지·관리 및 일상 점검

2. 해당 도자연유산등의 주변 환경의 보호

3. 해당 도자연유산등의 공개·전시·홍보 등 활용 시 도자연유산등의 훼손·멸실 등 방지

4. 해당 도자연유산등의 관람·체험 등에 참여하는 사람의 안전 관리

5. 그 밖에 해당 도자연유산등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필요한 사항

제25조의2(손실의 보상)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1. 제35조제1항제1호부터제4호까지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여 손실을 입은 자

2. 제35조제2항에 따른 조치로 인하여 손실을 입은 자



1. 도자연유산등의 관리 상황이 보존상 적당하지 아니하거나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소유자등에 대한 다음 각 목 행위의 금지 또는 제한

가.·나. (생략)

다. 도자연유산등의 생태계를 훼손할 우려가 있는 법 시행령 제34조제2항제2호에 따른 생물의 방치 행위

2. ~ 5.(생략)

② ~ ⑤ (생략)

1. -----  
-----  
-----  
-----

가.·나. (현행과 같음)

다. -----  
-----  
-----제34조제2항제3호에  
-----

2. ~ 5.(현행과 같음)

② ~ ⑤ (현행과 같음)

## 관련 법령 발췌

### ○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연유산”이란 자연물 또는 자연환경과의 상호작용으로 조성된 문화적 유산으로서 역사적·경관적·학술적 가치가 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동물(그 서식지, 번식지 및 도래지를 포함한다)

나. 식물(그 군락지를 포함한다)

다. 지형, 지질, 생물학적 생성물 또는 자연현상

라. 천연보호구역

마. 자연경관: 자연 그 자체로서 심미적 가치가 인정되는 공간

바. 역사문화경관: 자연환경과 사회·경제·문화적 요인 간의 조화를 보여주는 공간 또는 생활장소

사. 복합경관: 자연의 뛰어난 경치에 인문적 가치가 부여된 공간

2. “천연기념물”이란 제1호가목부터 라목까지의 자연유산 중 역사적·경관적·학술적 가치가 인정되어 제11조에 따라 국가유산청장이 지정하고 제14조에 따라 고시한 것을 말한다.

3. “명승”이란 제1호마목부터 사목까지의 자연유산 중 역사적·경관적·학술적 가치가 인정되어 제12조에 따라 국가유산청장이 지정하고

제14조에 따라 고시한 것을 말한다.

4. “시·도자연유산”이란 천연기념물 및 명승이 아닌 자연유산 중 역사적·경관적·학술적 가치가 인정되어 제40조제1항에 따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가 지정하고 제42조에 따라 준용되는 제14조에 따라 고시한 것을 말한다.

4의2. “자연유산자료”란 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라 지정되지 아니한 자연유산 중 역사적·경관적·학술적 가치가 인정되어 제40조제2항에 따라 시·도지사가 지정하고 제42조에 따라 준용되는 제14조에 따라 고시한 것을 말한다.

5. “천연기념물등”이란 천연기념물, 명승, 시·도자연유산 또는 자연유산자료를 말한다.

6. “보호물”이란 자연유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제13조에 따라 지정되고 제14조에 따라 고시된 건물이나 시설물을 말한다.

7. “보호구역”이란 일정한 지역이 천연기념물등으로 지정된 경우 지정된 면적을 제외한 지역으로서 그 천연기념물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제13조에 따라 지정되고 제14조에 따라 고시된 구역을 말한다.

8. “역사문화환경”이란 자연유산 주변의 자연경관이나 역사적·문화적 가치가 뛰어난 공간으로서 자연유산과 함께 보호할 필요가 있는 주변 환경을 말한다.

9. “전통조경”이란 우리나라 고유의 역사·문화·사상 등을 담아 수목

을 식재하거나 건축물을 배치하는 등 전통적인 기법으로 외부공간을 조성하는 것을 말한다.

제27조(관리단체의 관리) ① 국가유산청장은 제26조에 따라 지정된 관리단체에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의 보존·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이하 “관리행위”라 한다)를 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② 누구든지 제26조에 따라 지정된 관리단체의 관리행위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의 관리행위에 필요한 경비는 해당 관리단체가 부담한다. 다만, 관리단체가 부담능력이 없으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의 범위에서 이를 지원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른 관리행위의 구체적인 범위와 내용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제61조(손실의 보상) ① 국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1. 제8조제1항, 제28조 및 제29조에 따른 조사행위로 인하여 손실을 입은 자
2. 제22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여 손실을 입은 자
3. 제22조제2항에 따른 조치로 인하여 손실을 입은 자

② 제1항에 따른 손실보상의 구체적인 대상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관리행위의 범위 및 내용) 법 제27조제2항에 따른 관리행위의 구체적인 범위와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해당 천연기념물·명승 및 그 보호물의 유지·관리 및 일상 점검
2. 해당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의 주변 환경의 보호
3. 해당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의 공개·전시·홍보 등 활용 시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의 훼손·멸실 등 방지
4. 해당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의 관람·체험 등에 참여하는 사람의 안전 관리
5. 그 밖에 해당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필요한 사항

제34조(행정명령) ① 국가유산청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하는 경우에는 그 조치기한을 정하여 통보해야 한다.

② 법 제22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의 금지 또는 제한”이란 다음 각 호의 행위의 금지 또는 제한을 말한다.

1.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에 피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인공구조물 또는 훼손된 안내판 등의 방치 행위
2.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을 오염시킬 우려가 있는 오염물질이나 폐기물의 방치 행위
3.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의 생태계를 훼손할 우려가 있는 다음 각 목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생물의 방치 행위

가.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생태계교란 생물

나.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해양생태계 교란생물

③ 법 제22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1. 산불 진화 또는 산림병충해 방제 행위

2.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에 따라 지정  
· 고시된 야생화된 동물의 포획·반출 행위

3. 천연기념물인 동물 또는 식물의 질병 감염이나 개체 수 감소에 대  
응하기 위한 다른 동물·식물의 포획·채취 행위

4. 제2항제3호에 따른 생물 또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  
률」에 따른 유해야생동물의 포획·채취 또는 반출 행위

④ 국가유산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국가의 부담으로 같은 조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조치를 하려면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의 명칭, 수량, 조치내용, 착수시기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의 소유자, 관리자 또는 관리단체에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제48조(손실의 보상) ① 법 제61조제1항에 따른 손실보상의 구체적인 대  
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61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 타인 토지 등에 대한 출입, 측량, 발굴, 장애물의 제거, 표본 채취나 그 밖의 조사행위로 토지·시설물 등을 원래의 목적대로 사용하지 못하게 되어 발생한 손실액
2. 법 제61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 다음 각 목의 비용
  - 가. 법 제22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는데 드는 비용
  - 나. 법 제22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명령의 이행으로 인하여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을 원래의 목적대로 보존·관리 또는 활용하지 못하게 되어 발생한 손실액
3. 법 제61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을 원래의 목적대로 보존·관리 또는 활용하지 못하게 되어 발생한 손실액. 다만,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의 손실액은 제외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손실을 보상받으려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에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의 명칭, 수량, 소재지 또는 보관 장소와 그 사유를 적고 손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국가유산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 ③ 국가유산청장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신청인의 의견을 들어 보상금액을 결정하고 신청인에게 알려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그 보상금액은 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결정해야 한다.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손실보상의 대상 및 절

차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국가유산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